

의안번호	2200377
의 퇴 인	허영의원
회 답 일	2024. 6. 27.
추계번호	24A084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제1항 (입주기업체의 지원)	○ 관리기관 ¹⁾ 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45조의2제3항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 사업시행자 ²⁾³⁾ 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3항)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제8호의2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45조의5제2항 (비용부담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⁴⁾ 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제2호 신설)	재량규정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임대 등) ①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44조제1항 (입주기업체의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5조의2제3항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관리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3	안 제45조의5제2항 (비용부담 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산업단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수행(안 제44조제1항),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수립(안 제45조의2제3항제8호의2 신설),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보조(안 제45조의5제2항제2호 신설)를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44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수행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5조의2제3항제8호의2 신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5조의5제2항제2호 신설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보조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될 사업 등의 내용 및 규모와 기준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안 제4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확대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45조의12, 제45조의17 등에 근거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및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의 내역사업이며, 지역

균형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2024년 예산은 2,766.2억원으로 편성

[표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

(백만원)

구분	2023 예산	2024 예산
산업단지구조고도화	161,413	276,617
산단환경개선펀드	95,848	186,770
휴폐업공장리모델링	14,260	26,820
복합문화센터건립	33,320	44,740
혁신지원센터구축	9,140	9,035
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	8,845	6,252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신규)	—	3,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5202-304)’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설치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사업이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2024년 예산은 3,692.8억원으로 편성

- 이에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신헌태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헌태	02-6788-4653	heontshin@nabo.go.kr